

조선왕릉의 가정자각에 관한 연구

- 규범화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a-Jungjagak(temporary T-shaped house) in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 Focus on the Process of Norms -

홍 석 주 | Hong, Seok-Joo

정회원, 서일대학교 건축과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s

Uigwe is official reports of the Joseon dynasty. They published from early Joseon but remain from 17C. We can search many hidden informations in them. Ga-Jungjagak (temporary T-shaped house) is one of them. It is unique architecture of the Joseon dynasty but it doesn't exist now at all.

We can see many drawings describing Ga-Jungjagak (temporary T-shaped house) located next to Jungjagak in Uigwe. Jungjagak (T-shaped house) was built in royal tombs for sacrifice. Ga-Jungjagak was built in royal tombs for sacrifice as Jungjagak but existed temporarily.

In this study, I want to find the process of norms Ga-Jungjagak in old records, official reports and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sults are as follows:

Ga-Jungjagak is the sacrifice space for queens in royal tombs.

It is need to avoid sacrifice of delight and sorrow at the same time. They sacrifice to represent sorrow after the death of kings and queens for three years. After three year, they sacrifice to represent delight for kings and queens became ancestral gods.

Ga-Jungjagak was destroyed three years later to combined sacrifices.

The shape of Ga-Jungjagak is similar to Jungjagak in the same tomb. But dimensions of Ga-Jungjagak are equal or smaller than Jungjagak and decorations are abstemious.

Keywords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Ga-Jungjagak (temporary T-shaped house), Jungjagak (T-shaped house), sacrifice, Uigwe(official report of Joseon dynasty)

키워드

조선 왕릉, 가정자각, 정자각, 제사, 의궤

* 본 연구는 2012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문명의 발달로 다양한 기록 방식 발달하여 우리는 현재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 방식을 보자면 상당히 제한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의례라는 기록 유형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기록 자료이다.

‘의례’라는 말 자체는 어떤 행사를 치를 때의 ‘의례와 규범’, 즉 의례의 규칙이나 규범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¹⁾ 그 기록 방식은 기록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며 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례는 영건의례와 산릉의례가 있다. 영건의례는 궁궐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 공사에 대한 기록이며 산릉의례는 왕릉 공사에 대한 기록이다. 영건의례는 건축에 대한 직접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제한적이므로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산릉의례는 모든 왕과 왕비의 능을 조성할 때마다 편찬되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산릉의례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볼 수 건축 유형인 가정자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자각은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삼년상 후에 철거를 전제로 건축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산릉의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산릉의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헌을 고찰하여 가정자각의 조성원리와 건축적 특성을 찾아보도록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의례는 조선초기부터 꾸준히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전 것은 모두 소실되어 17세기 이후의 의례만 현존한다. 따라서 이전 시대에 관한 내용은 주로 조산왕조실록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실록은 의례에 비해 내용이 간략하지만 시대의 단절 없이 남아있는 기록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17세기 이전의 내용은 실록의 기록을 따르고 17세기 이후의 내용은 산릉의례의 기록을 분석하여 가정자각의 시대

인 변화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산릉의례에 기록된 가정자각의 건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며 가정자각의 조성 원리와 건축 규모 및 특징으로 알아내도록 한다.

여기서 조선 왕릉과 대한제국의 황제릉은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대한제국 시기에 편찬된 산릉의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정자각의 운영

2.1 가정자각의 설치 예

산릉의례에는 산릉의 배치를 알 수 있는 「유문도」라는 도설이 있다. 여기에 때때로 가정자각이라는 건물이 나타난다. 『철인왕후예릉산릉도감의례』를 보면 길유궁을 사이에 두고 정자각과 가정자각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정자각은 정자각과 별도로 건축된 건물이다.

이 그림과 현재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현재의 배치도를 보면 가정자각은 볼 수 없고 정자각만이 있다. 현재 가정자각 터는 비어 있으며 그 부근에 초석이 흩어져 있어서 이곳에 원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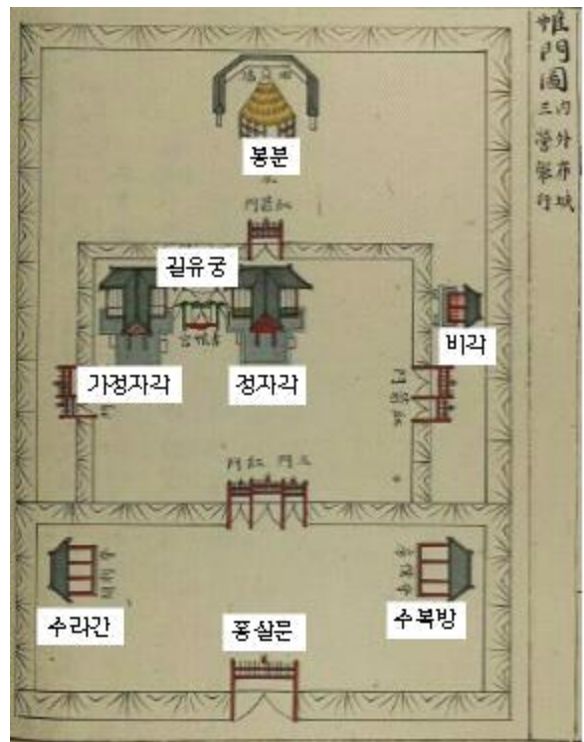


그림 1 『철인왕후예릉산릉도감의례』의 유문도

1) 영건의례연구회, 『영건의례』, 동녘, 2010, 20쪽



그림 2 예릉 정자각(왼편이 가정자각 터)



그림 3. 예릉 가정자각 터 부근의 건축물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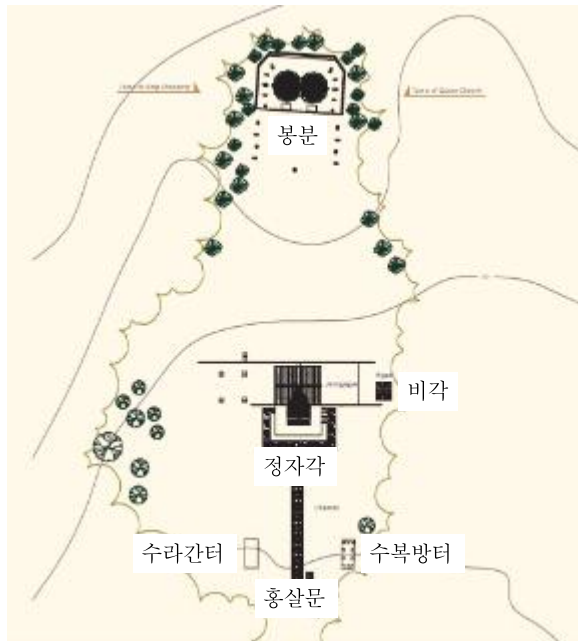


그림 4 현재의 예릉 배치도

산릉의례에 정자각과 가정자각이 설치된 예릉 집계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여기서 가정자각이 설치된 예릉 보면 대체로 왕비의 능을 조성할 때가 많고 임금의 능을 조성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임금의 능에 가정자각을 세운 예가 적은 것은 왕비의 상이 먼저 있을 경우 단릉으로 조성하고 임금은 이와 다른

위치에 능을 쓰는데 이유가 있어 보인다. 조선시대 능을 조성한 사례를 보면 원비의 능과 다른 곳에 임금의 능을 쓰고 계비가 죽으면 여기에 함께 묻히는 경우가 많다. 즉 임금이 죽기 전에 왕비가 먼저 죽으면 계비를 맞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금이 죽으면 대체로 원비의 능과 다른 위치에 임금의 능을 새로 조성하고 후에 계비가 죽으면 이곳에 합장하여 함께 묻히는 것이다.

표 1. 의례에 기록된 정자각과 가정자각

능	의례명	연대	왕(왕비)명	정자각	가정자각
목릉	의인왕후산릉도감의례	선조34년	(선조원비)의인왕후	●	
	목릉수개의례	광해1	선조	●	
장릉	인목왕후산릉도감의례	인조10	(선조계비)인목왕후		●
	인조장릉산릉도감의례	효종즉위	인조		●
휘릉	장렬왕후산릉도감의례	숙종14	(인조계비)장렬왕후	●	
	(효종)산릉도감의례	현종즉위	효종	●	
영릉	인선왕후산릉도감의례	현종15	(효종비)인선왕후	●	●
	현종승릉산릉도감의례	숙종즉위	현종	●	
승릉	명성왕후승릉산릉도감의례	숙종9	(현종비)명성왕후		●
	사릉봉릉도감의례	숙종24	(단종비)정순왕후	●	
장릉	장릉봉릉도감의례	숙종25	단종	●	
	인경왕후산릉도감의례	숙종7	(숙종원비)인경왕후	●	
명릉	인현왕후산릉도감의례	숙종27	(숙종 1 계비)인현왕후	●	
	(숙종)산릉도감의례	경종즉위	숙종		●
의릉	인원왕후명릉산릉도감의례	영조33	(숙종 2 계비)인원왕후		●
	명릉개수도감의례	영조20	명릉 개수	●	
은릉	(의릉)산릉도감의례	영조1	경종	●	
	(선의왕후)의릉산릉도감의례	영조6	(경종계비)선의왕후		●
용릉	은릉봉릉도감의례	영조15	(중종원비)단경왕후	●	
	장조영무원묘소도감의례	영조38	장조(사도세자)	●	
홍릉	현릉원원소도감의례	정조13	장조	●	
	현경혜빈현릉원원소도감의례	순조15	(장조비)현경왕후		●
홍릉	정성왕후산릉도감의례	영조33	(영조원비)정성왕후	●	

원릉	영종대왕산릉도감의궤	정조즉위	영조	●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	순조5	(영조계비) 정순왕후		●
건릉	건릉산릉도감의궤	순조즉위	정조	●	
	건릉천봉산릉도감의궤	순조21	(정조비)효의왕후	●	●
인릉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	헌종즉위	순조	●	
	순조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철종7	순조	●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	철종8	(순조비)		●
경릉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헌종9	(헌종원비)효현왕후	●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철종즉위	헌종		●
	효정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광무7	(헌종계비)효정왕후		●
수릉	문조수릉산릉도감의궤	헌종12	문조(효명세자)	●	
	문조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철종6	문조	●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	고종27	(문조비)신정왕후		●
예릉	철종예릉산릉도감의궤	고종즉위	철종	●	
	철인왕후예릉산릉도감의궤	고종15	(철종비)철인왕후		●

2.2 가정자각의 기원

처음으로 가정자각의 건축 예가 실록에 언급된 것은 단종 즉위년에 문종의 능을 조성할 때였다. 문종의 능을 조성하는 동안 정자각 건립공사가 지체되자 우선 가정자각을 건립하여 산릉 의례를 치르도록 하였다.²⁾ 이때의 가정자각은 정자각이 제때 완공되지 못할 경우에 짓는 가건물의 성격이었다. 그러나 이후 성종 때 세조 비인 정희왕후의 능을 조성할 때 지은 가정자각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성종14년 4월 26일 실록 기사³⁾에 따르면 기존 세조의 능에 있던 정자각과는 별개로 가정자각을 세워 정

2)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현궁(玄宮)을 내린 뒤에 만일 공역(工役)을 마치지 못하면, 청컨대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의하여 지방(紙榜)의 표기(標記)를 가정자각(假丁字閣)에 안치(安置)하고, 조식의 상식(上食)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역사가 끝나면 이를 불사르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단종실록』 즉위년(1452) 8월 17일(정축)

3) 『성종실록』, 성종14년 4월 26일:“명하여 영돈녕 이상과 예조를 불러 광릉에 정자각을 세우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심희 등이 의논하기를 “3년 안에 세조대왕의 제사는 구정자각에서 행하고, 대행대비의 제사는 가정자각에서 행하며, 또 따로 중앙에 한 정자각을 지어서 3년 후에 합해서 제사하고 다른 두 정자각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희왕후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삼년상이 끝나면 두 개의 능 사이에 지은 또 다른 정자각에 합제한다. 이때 세조의 능에 이미 있던 정자각과 정희왕후의 능에 조성했던 가정자각은 철거하였다. 이것은 앞서 문종의 능을 조성하면서 설치했던 가정자각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문종의 능에 설치했던 가정자각은 말 그대로 임시로 정자각을 임시로 대체할 가건물의 성격인 반면, 성종 때 조성한 정희왕후의 능에 설치된 가정자각은 정자각과 차별화된 의미를 지닌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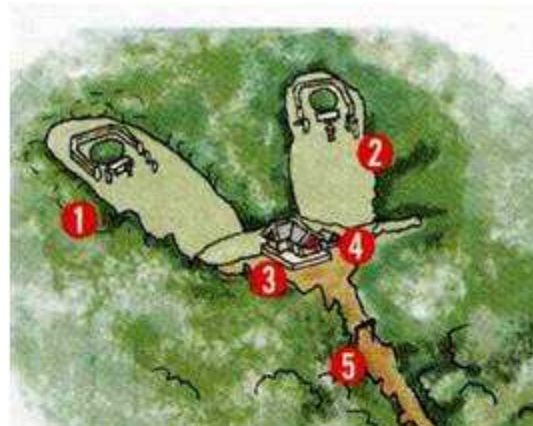


그림 5. 광릉 배지도

①세조릉 ②정희왕후릉 ③정자각 ④비각 ⑤홍살문
(그림출처;문화재청, 『조선왕릉답사수첩』, 미술문화, 2007)

정희왕후의 능에 가정자각을 세운 것은 동원이강형으로 능을 조성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동원이강형이란 한 줄기에서 갈라진 두 개의 언덕에 왕과 왕비의 능을 따로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문종의 능인 현릉(顯陵)도 동원이강형이지만 원래는 각기 따로 능을 썼었다. 문종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현덕왕후는 경기도 안산에 묻혀 소릉(昭陵)이라는 능호를 받았다. 그런데 효심 깊은 문종은 현덕왕후 곁이 아닌 세종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세종의 능인 영릉 옆으로 장지를 정해두었지만 땅을 파보니 물이 나오고 바위가 있고 하여 현재의 위치로 오게 되었다. 이때까지 문종과 문종 비의 능은 각기 단릉으로 있었다. 그런데 소릉에 묻혔던 현덕왕후가 단종복위 사건에 휘말려 무덤이 파헤쳐지는 수난을 당했다. 이후 1513년(중종8)에 복위되어 문종 곁으로 천장하였는데 이때 동원이강형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니 성종 때 조성된 정희왕후의 능이 조선왕릉에서 최초의 동원이강형으로 조성된 예이다.

동원이강형으로 능을 조성할 때 문제는 서로 떨어진 두 개의 언덕에 능을 만들다보니 기존의 능 앞에 있는 정자각과 새로 조성하는 능과는 방향이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자각으로는 새로운 능의 의례를 행하기 어려우므로 또 다른 정자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두 개의 정자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자각 한 개는 격식을 덜 갖추어 건립해도 된다. 삼년상이 끝나고 나면 합제를 하기 때문이다. 왕과 왕비의 능을 함께 쓸 때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합제를 지내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합제를 지내게 되면 하나의 정자각만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가정자각은 철거한다. 즉 가정자각은 합제의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물이다. 이렇게 동원이강형 능에 합제의 필요성과 결부되어 시작한 가정자각은 이후 능에는 동원이강형이 아니더라도 건립하게 되었다.

표 2. 조선시대 왕릉 형식

왕/왕비		별세	능호	형식
태조	원비 신의왕후	1391	제릉(齊陵)	단릉
	태조	1408	건원릉(健元陵)	단릉
	계비 신덕왕후	1396	정릉(貞陵)	단릉
정종	정종	1419	후릉(厚陵)	(북한소재)
	정안왕후	1412		
태종	태종	1422	헌릉(獻陵)	쌍릉
	원경왕후	1420		
세종	세종	1450	영릉(英陵)	합장 (예종1년천장)
	소헌왕후	1446		
문종	문종	1452	현릉(顯陵)	동원이강
	현덕왕후	1441		
단종	단종	1457	장릉(莊陵)	단릉
	정순왕후	1521	사릉(思陵)	단릉
세조	세조	1468	광릉(光陵)	동원이강
	정희왕후	1483		
예종	원비 장순왕후	1461	공릉(恭陵)	단릉
	예종	1469	창릉(昌陵)	동원이강
성종	원비 공혜왕후	1474	순릉(順陵)	단릉
	성종	1494	선릉(宣陵)	동원이강
계비 정현왕후	1530			
중종	원비 단경왕후	1557	온릉(溫陵)	단릉
	1계비 장경왕후	1515	희릉(禧陵)	원래 동원이강
	중종	1544	정릉(靖陵)	후에 천장합
	2계비 문정왕후	1565	태릉(泰陵)	단릉
인종	인종	1545	효릉(孝陵)	쌍릉
	인성왕후	1577		
명종	명종	1567	강릉(康陵)	쌍릉
	인순왕후	1575		
선조	원비 의인왕후	1600	목릉(穆陵)	동원이강 변형
	선조	1608		
계비 인목왕후	1632			
인조	원비 인렬왕후	1635	장릉(長陵)	쌍릉(영조7년에)

	인조	1649		천장하여 합장 릉이 됨)
	계비 장렬왕후	1688	휘릉(徽陵)	단릉
효종	효종	1659	영릉(寧陵)	상하봉 쌍릉
	인선왕후	1674		
현종	현종	1674	송릉(崇陵)	쌍릉
	명성왕후	1683		
숙종	원비 인경왕후	1680	익릉(翼陵)	단릉
	1계비 인현왕후	1701	명릉(明陵)	쌍릉· 동원이강
	숙종	1720		
	2계비 인원왕후	1757		
경종	원비 단의왕후	1718	혜릉(惠陵)	단릉
	경종	1724	의릉(懿陵)	상하봉 쌍릉
계비 선의왕후	1730			
영조	원비 정성왕후	1757	홍릉(弘陵)	단릉
	영조	1776	원릉(元陵)	쌍릉
계비 정순왕후	1805			
정조	정조	1800	건릉(健陵)	합장
	효의왕후	1821		
순조	순조	1834	인릉(仁陵)	합장
	순원왕후	1857		
현종	원비 효현왕후	1843	경릉(景陵)	삼연릉
	현종	1849		
	계비 효정왕후	1903		
철종	철종	1863	예릉(睿陵)	쌍릉
	철인왕후	1878		
고종	명성태황후	1895	홍릉(洪陵)	합장릉
	고종	1919		
순종	원비 순명효황후	1904	유릉(裕陵)	합장릉 (동봉삼실)
	순종	1926		
	순정효황후	1966		

3 가정자각의 조성원리

3.2 의례의 규범화 과정과 가정자각 건축

임금이 죽으면 5일 동안 혼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입관을 하고 5개월 만에 국장을 치른다. 장례가 끝나면 신주를 궁궐의 혼전에 모시고 삼년상이 끝나면 종묘에 부묘한다. 여기서 삼년상 동안은 흉례에 해당하고 이후 의례는 종묘에 부묘된 뒤이기 때문에 길례에 해당한다. 삼년상 동안은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라 흉례이지만 삼년상 후에는 왕실의 조상신에게 예를 올리는 길례인 것이다.

정자각에서는 삼년상 동안 흉례를, 삼년상 이후에는 길례를 올린다. 따라서 임금과 왕비의 능을 함께 쓰면 기존의 능을 위한 길례와 새로 조성된 능의 흉례를 정자각과 가정자각에서 행한다. 기존의 능에 올리는 예는 제례에 해당되고 새롭게 조성된 능에 올리는 예는 상례이며 각각의 예를 위해 입는 옷도 다르다.

중종 때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의 상을 당하여 능을

선왕과 함께 선릉에 쓰면서 예를 올린 방식이 실록에 나온다. 중종이 새벽에 소련을 타고 선릉의 정자각에 나아가 참포 차림으로 선왕에게 제사지내고, 막차에 들어가 최복으로 갈아입고 정현왕후에게 제사지냈다는 내용이다.⁴⁾ 참포는 제사를 지낼 때 임금이 입는 열은 청색 도포로 길례를 위한 복장이고, 최복은 부친상,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아들이 할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3년 동안 입는 거칠고 굵은 삼베로 만든 옷으로 아랫단을 김지 않은 흉례를 위한 복장이다.

이처럼 삼년상 중에는 같은 능에 위치하더라도 길례에 해당하는 제례를 올리는 의례의 성격과 흉례에 해당하는 상을 치르기 위한 의례 성격이 다르므로 흉례와 길례의 공간이 각각 필요하다. 따라서 임금과 왕비의 능을 함께 쓸 경우, 기존에 있던 능에 길례를 올려왔던 정자각 외에 새로 조성된 능을 위한 흉례 공간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자각 외에도 가정자각이 필요한 것인데 삼년상을 마치면 흉례를 위한 전각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므로 가정자각을 헐고 정자각에서 합제하여 제사를 올린다.

그렇다면 정자각은 길례 공간이고 가정자각은 흉례 공간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국조상례보편』을 보면 가정자각을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 길례와 흉례가 아닌 왕후를 위한 공간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왕후를 부장할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자각을 세우며 3년이 지난 뒤에는 바로 철거한다고 한다. 그리고 내상이 먼저 난 경우에는 대왕의 능을 동영(同塋)하고 예전 정자각을 쓰되, 별도로 가정자각을 세워 왕후의 신탐을 안치한다.

즉 가정자각은 왕비의 부장을 위해 필요하며 3년 뒤 철거를 전제로 한 건축물이다. 그리고 왕비의 능이 이미 있는 곳에 왕의 능을 함께 쓸 경우에는 예전 정자각을 쓰되 별도로 가정자각을 세워 왕후의 신탐을 안치한다. 이 뜻은 먼저 있는 왕의 능에 왕비의 능을 함께 쓸 때 가정자각을 짓는다. 그리고 왕비의 능이 먼저 있는 곳에 왕의 능을 함께 쓰게 될 경우, 기존의 정자각은 왕의 상례를 위해 쓰며 그동안 왕비의 신탐은 가정자각을 새로 지어 모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자각과 가정자각은 길례와 흉례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례를 행하기 위한 공간인데, 기존의 능이 왕의 능인가 왕비의 능인가에 따라 가정자각은 길례의 공간도 되고 흉례 공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조상례보편』에 기록된 내

4) 『중종실록』, 중종25년 11월 13일

용은 영조 때 정리된 것으로 원래부터 정립되었던 개념은 아니다. 1649년(효종즉위) 인조의 능을 원비 인렬왕후가 묻힌 장릉(長陵)으로 정했을 때만 해도 이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대체로 원비의 능을 단릉으로 쓰고 임금이 능에 처음 들어가고 다음에 계비 사후에 합장하는 형식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당장 가정자각 건립이 문제가 되었다. 왕비의 상이 먼저 있을 경우에는 삼년상이 끝난 후에 종묘에 바로 모시지 않고 왕의 임종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의 삼년상이 끝난 뒤에야 함께 부모된다. 즉 왕보다 먼저 죽은 왕비는 아직 조선왕실의 조상신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가정자각 건축을 생략하고 기존의 정자각에서 왕의 상례를 함께 치르기를 제안하였으나⁵⁾ 길흉의 예를 병행할 수 없다는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국에는 가정자각을 설치했다.

그리고 숙종의 능을 인조의 능에 준하여 조성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확고해졌다. 숙종은 먼저 죽은 인현왕후 곁에 묻히고 싶어 했다. 그래서 경종 즉위년에 숙종 능을 조성했을 때, 기존의 왕비 능에 왕릉을 조성하는 작업을 했던 선례인 인조 장릉의 예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때 왕비의 능에 먼저 있던 정자각에서 왕의 상례를 행하고, 새로 건립한 가정자각에 왕비의 신탐을 옮겨왔다.⁶⁾ 그리고 왕의 삼년상을 마친 후에

5) 충효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가정자각을 목릉의 예에 따라 방금 역사(役事)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다시 《오례의》를 상고해 보건대 ‘왕후의 상이 대왕의 상 이전에 있으면 3년 안에는 산릉과 혼전에 모두 제사를 지낸다.’는 글이 있으니, 가정자각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더 참고하여 정하게 하소서.”하니, 예조가 복계(覆啓)하여 대신 및 예를 아는 사람들에게 널리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대신과 김집이 모두 아뢰기를, “길흉을 병행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풍속에 여묘살이 하는 자 중에 양친의 조석상식을 합제하는 자가 많았는데, 선정(先正) 이황(李滉)이 이를 그르게 여겨 말하기를 ‘합제하는 것이 의거할 만한 명문(明文)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일(忌日)에 다만 기일을 당한 신주에게만 제사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상을 당하여서도 어찌 합제해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사대부 집을 위하여 한 말이지만 사가(私家)와 왕가(王家)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선조(先朝)에서 이미 행한 예를 따라 그대로 가정자각을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 『효종실록』, 즉위년(1649) 7월 28일

6) 일찍이 장릉(長陵)의 가정자각을 보니 체양(體樣)은 약간 작운데, 왕비의 능이 먼저 있었고 대왕의 능이 뒤에 있었으므로, 새로운 재궁을 옛 정자각에 배설하고 왕비의 신탐·상탁은 가 정자각에 옮겨 봉안하였다가 3년 후에 훼손하였습니다. 지금도 장릉의 예를 따라 왕비의 신탐·상탁을 가정자각에 옮겨 봉안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경종실록』, 즉위년(1720) 6월 18일

는 가정자각을 헐고 합제하였다. 이후 영조 대에 와서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하였으며, 능을 조성할 때 가정자각은 여기에 준해서 건립하고 사용하였다.

3.3 가정자각 철거 후의 정자각 운영

정희왕후의 능을 조성했을 때 처음으로 의례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가정자각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삼년상 후에 길례로 바뀌었을 때 정자각의 사용도 문제가 되었다. 정희왕후의 능을 쓰면서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자각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⁷⁾ 혹자는 상제를 마친 뒤에 세조의 구정자각에서 함께 제사하는 의견을 냈다. 다른 의견으로는 두 능간 거리가 먼 이유로 따로 정자각을 지어서 각각 제사지낼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세조의 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 능의 중간에 새로 정자각을 지을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팽팽한 논의 끝에 결국, 정자각을 두 능 사이에서 옮겨지어서 합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삼년상을 마친 후, 두 능 사이에 정자각을 새로 두어서 기존의 정자각과 가정자각을 모두 철거하는 원칙은 조선시대 동안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인조10년에 있었던 인목대비의 상례가 그 예이다.

당시 이전 사례를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왕후릉을 정하고 대왕릉을 뒤에 정한 경우에는 정자각을 대왕릉 앞으로 옮겨 세우거나 혹은 지형을 따라서 두 능 사이를 합쳐 설치하기도 했으며, 대왕릉을 먼저 정한 경우에는 정자각을 그대로 대왕릉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 제사 등성이에서 목릉까지의 거리가 이미 서로 멀지 아니하고 장애가 없으니, 정자각을 마땅히 옛날대로 두어야 할 것 같고, 신릉의 신로를 신설하여 옛 정자각을 접속시키되 현릉과 광릉의 왕후 신로 제도와 같이하면, 옮겨 건립하는 폐단이 없고 합쳐 설치하는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⁸⁾라고 하였다.

즉 목릉에는 선조의 원비인 의인왕후와 선조의 능이 이미 동원이강형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후에 인목왕후의 능이 더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인목왕후의 능 앞에 가정자각을 세우고 삼년상이 끝난 후에 새로 지은 정자각에 모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자각에 모신 것이다. 이렇게 가정자각의 사용이 끝난 후에 새로

지은 정자각이 아닌 기존의 정자각에 모시는 일은 이후에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임금보다 왕비가 먼저 죽었을 경우 왕비의 능을 조성할 때 미리 임금의 능이 들어가게 될 우측을 비워두어 정자각의 중심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인조는 원비 인렬왕후의 능을 쓸 때 자신의 능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두고 그 중간에 정자각을 짓도록 하였다.⁹⁾ 후에 숙종은 인조 장릉의 예를 따라 먼저 죽은 왕비의 능을 조성할 때 자신의 능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두고 그 중간에 정자각을 건립하였다. 숙종은 인현왕후의 능을 조성하면서 자신의 능을 함께 쓰도록 미리 뜻을 밝혔다. 그리고 장차 자신의 무덤이 들어설 자리를 미리 비워두고 현재 조성하는 인현왕후의 무덤 중간에 놓인 위치에 정자각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무덤이 들어오고 삼년상이 끝난 후 합제하였을 때의 정자각 축이 맞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왕비의 능만 있을 경우 정자각과 무덤의 축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합장했을 때를 고려하여 정자각의 위치를 잡은 경우이다.

이후 조선 후기로 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동원이강형으로 조성되는 경우는 드물어지고 쌍릉이나 합장릉으로 조성되었다. 이 때문에 가정자각 철거 후 정자각의 사용은 축이 어느 정도 맞는 상태라 굳이 새로 지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가정자각의 건축적 특징

4.1 가정자각의 건축 규모

경종 즉위년에 숙종 능을 조성할 때 인조 장릉의 예를 따랐다. 이를 위해 인조 장릉의 가정자각을 살펴본 내용을 기록하기를 가정자각은 정자각보다 “체양(體樣)은 약간 작다”¹⁰⁾고 하였다.

장릉의 경우 인조가 원비인 인렬왕후가 먼저 묻힌 곳에 능을 썼다. 인조는 왕비의 능을 조성할 당시부터 미리 자신의 능을 쓸 자리를 생각해서 정자각을 두 능의 중간에 오도록 설계했다. 그래서 인조의 상을 당

9) 인렬 왕후(仁烈王后)의 장사 때에 왕이 명하여 곡장(曲牆)이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자각도 중앙에 짓고 모든 상설(象設)의 제도도 다 효릉(孝陵)을 본떠 백성을 거듭 번거롭게 하지 말게 하였다. - 『인조실록』, 인조대왕 묘지문

10) 『경종실록』, 즉위년(1720) 6월 18일

7) 『성종실록』 14년(1483) 5월 27일

8) 『인조실록』, 인조10년 7월 13일

해서 능에 왔을 때는 기존의 정자각을 인조의 상례를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새로 지은 가정자각은 인렬왕후의 신위를 옮겨와 제례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때 지은 가정자각의 자세한 내용은 『인조장릉산릉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가정자각의 규모는 정전 3칸, 배위청 2칸 건물로, 어간 13자, 협간 8자에 대들보 길이가 12자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를 하였다.

다른 능의 경우에도 동일한 능에 설치되었던 정자각과 가정자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산릉의궤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정자각과 가정자각의 규모 비교

능명	의궤명	항목	규모	
			정전	배위청
목릉	선조목릉천릉도감의궤 (1630)	정자각	3칸 (12+14+12)×2칸 대들보 25자×2조 도리 17자×7/12자×14 고주 16자×4 평주 10자×8조	1칸×2칸 기둥 11자×4 보 14자×2 도리11자×6
	인목왕후산릉도감의궤 (1632)	가정자각	3칸×2칸(정자각에 준함)	1칸×2칸(정자각에 준함)
승릉	현종 승릉산릉도감의궤 (1674)	정자각	정전3칸. 익각 2칸 동서5칸(7자+11.5자+13.8+11.5자+7자) 남북2칸(10.5자+10.5자) 주고 12자	배위청 3칸(원주 6개) 동서1칸(13.8자) 남북3칸(9.5자+9.5자+9.5자) 주고 12자/지름 1,2자
	명성왕후 승릉산릉도감의궤 (1683)	가정자각	상동	상동
명릉	인현왕후 명릉산릉도감의궤 (1701)	정자각	정전 3칸, 익각 2칸 동서5칸(7자+11.5자+13.8+11.5자+7자) 남북 2칸 (12.5+12.5자) 주고 11.5자	배위청 3칸 동서1칸(13.8자) 남북3칸(9.5자+9.5자+9.5자) 주고 11.5자
	숙종 명릉산릉도감의궤 (1720)	가정자각	정전3칸/동서3칸(8자+10+8자) 남북2칸(8자+8자) 주고 10.8자	배위청 2칸 동서1칸(10자) 남북2칸 주고 9자
건	정조건릉천	정자	정전 3칸 동서	정중1칸에 남

릉	봉산릉도감의궤 (1821)	각	길이38자(정중1칸14자 좌우2칸 각12자), 남북 넓이24자, 주고 10.1자	쪽으로 연이어 2칸 건립(배위청), 남북 길이 24자 동서 넓이14자 기둥높이 10.5자 정자형
		가정자각	정전3칸 동서 길이 38자(정중1칸14자 좌우2칸 각 12자), 남북 넓이24자 주고 12.5자	배위청 남북 넓이 24자, 동서 넓이 14자
경릉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843)	정자각	동서3칸(12자+14자+12자) 남북2칸(12자+12자) 주고 10.1자	동서1칸(14자) 남북2칸(12자+12자) 주고 10.5자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1849)	가정자각	상동	상동

우선 규모 면에서 비교하면 칸수는 대체로 같다. 하지만 보, 도리, 기둥 치수는 정자각보다 가정자각의 치수가 작은 경우가 많았다.

숙종의 능인 명릉의 경우는 정자각과 가정자각이 칸수 자체가 다르다. 정자각은 동서5칸 남북2칸으로 하였지만 가정자각은 동서3칸 남북2칸으로 하였다. 정자각보다 가정자각을 훨씬 작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의례의 차이로 보인다. 인현왕후가 묻히고 사용된 정자각에서 숙종의 상례를 치르고 왕후의 길례는 가정자각을 새로 짓고 옮겨와 지냈다. 따라서 관이 들어갈 자리를 비롯하여 상례 때만 필요한 자리들이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보다 작은 규모로 지어도 무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4.2 가정자각과 정자각의 건축적 차이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의 도설에서는 정자각을, 『헌종대왕경릉산릉도감의궤』에서는 가정자각을 그림으로 묘사한 도설을 볼 수 있다. 경릉은 현종의 능으로 효현왕후의 상이 먼저 있었고 현종이 그 뒤에 들어갔으며, 후에 계비인 효정왕후의 능도 같이 써서 삼연릉이라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는 능이다. 『헌종대왕경릉산릉도감의궤』에 묘사된 가정자각은 먼저 능을 썼던 효현왕후의 신위가 옮겨져 정자각에서 현종의 상례를 치르는 동안 길례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다. 현종의 상례는 기존의 정자각에서 치렀다.

두 의궤의 내용을 보면 앞의 표 내용과 같이 규모 면에 있어서는 경릉의 정자각과 가정자각이 같다. 그

러나 의례에 묘사된 그림을 보면 정자각과 가정자각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정면과 측면 지붕에 정자각은 풍관이 있고 가정자각은 풍관이 없다. 풍관은 박공 아래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설치한¹¹⁾ 것으로 지붕 부재가 빗물에 젖어 썩는 것을 방지한다. 가정자각은 3년 뒤에 철거를 전제로 하여 유한한 건물 수명을 갖고 있으므로 풍관을 생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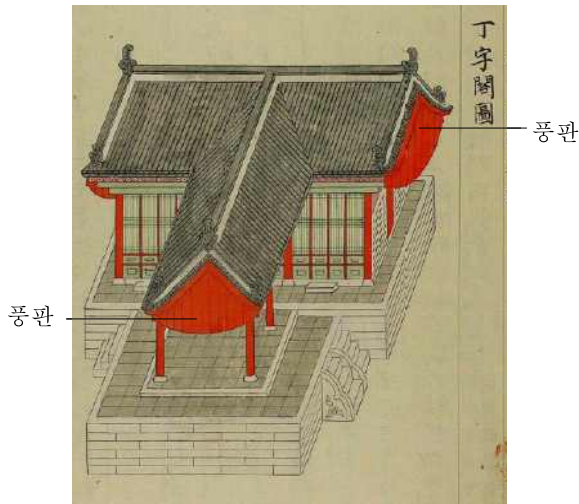


그림 6. 경릉의 정자각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례』, 1843)



그림 7. 경릉의 가정자각
(『현종대왕경릉산릉도감의례』, 1849)

또한 두 의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와의 사용에 있어서 정자각과 가정자각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정자각은 대아련, 대방초, 취두, 용두, 북수, 운각, 용두, 잡상, 토수 등을 올려서 격식을 갖추었던 반면, 가정자각은 상와로 올리고 잡상을 두지 않아 소박한 지붕 형태를 하였다.

즉 가정자각은 정자각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삼년상 뒤에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정자각과 비슷하지만 다소 간소하게 건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정희왕후의 능에 가정자각을 세운 것을 시초로 하여 왕과 왕비를 합장하여 능을 조성할 때 가정자각을 건축하였다. 가정자각은 왕비의 부장을 위해 필요하며 3년 뒤 철거를 전제로 한 건축물이다.

처음에는 동원이강형으로 능을 조성할 때 왕과 왕비의 능이 서로 먼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자각과는 별도로 가정자각을 지었으나, 이후 의례의 규범화 과정을 거치며 길례와 흉례의 엄격한 구분에 의한 의례의 성격 때문에 가정자각을 건축하였다.

가정자각 철거 후의 정자각 운영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정희왕후의 능은 가정자각을 철거하고 정자각을 두 능 사이에다 옮겨지어서 합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목릉은 동원이강형이라 능 사이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가정자각의 사용이 끝난 후에 새로 지은 정자각이 아닌 기존의 정자각에 모시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에 조성된 쌍릉이나 합장릉의 경우에도 가정자각 철거 후 정자각을 굳이 새로 지을 필요가 없이 기존의 정자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정자각의 건축 규모를 보면 정자각과 가정자각의 칸수는 대체로 같다. 하지만 보, 도리, 기둥 치수는 정자각보다 가정자각의 치수가 작은 경우가 많았다. 숙종의 능인 명릉의 경우는 정자각과 가정자각이 칸수 자체가 다르게 하여 정자각보다 가정자각을 훨씬 작게 하였다. 가정자각 규모를 작게 했던 이유는 관이 들어갈 자리를 비롯하여 상례 때만 필요한 자리들이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보다 작은 규모로 지어도 무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건축적 특징으로 정자각은 풍관이 있고 가정자각은 풍관이 없다. 그리고 기와의 사용에 있어서 정자각은 대아련, 대방초, 취두, 용두, 북수, 운각, 용두,

11)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101쪽

잡상, 토수 등을 올려서 격식을 갖추었던 반면, 가정자각은 상위로 올리고 잡상을 두지 않아 소박한 지붕 형태를 하였다.

이것은 가정자각이 3년 뒤에 철거를 전제로 한 유행한 수명을 가진 건물이므로 풍판을 생략하였으며 정자각과 비슷하지만 다소 간소하게 건축하였다.

철인왕후예릉산릉도감의궤, 고종15(1878)
 3. 『국역 국조상례보편』, 민속원, 2008
 4. 문화재청, 『조선왕릉답사수첩』, 미술문화, 2007
 5.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 동녘, 2010
 6.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7. 홍석주, 「정자각과 가정자각의 조성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5

참고문헌

1. 조선왕조실록
 2. 의궤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 선조34년(1601)
 목릉수개의궤, 광해1(1630)
 인목왕후산릉도감의궤, 인조10(1632)
 인조장릉산릉도감의궤, 효종즉위(1649)
 장렬왕후산릉도감의궤, 숙종14(1688)
 (효종)산릉도감의궤, 현종즉위(1659)
 인선왕후산릉도감의궤, 현종15(1674)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 숙종즉위(1674)
 명성왕후승릉산릉도감의궤, 숙종9(1683)
 사릉봉릉도감의궤, 숙종24(1698)
 장릉봉릉도감의궤, 숙종25(1699)
 인경왕후산릉도감의궤, 숙종7(1681)
 인현왕후산릉도감의궤, 숙종27(1701)
 (숙종)산릉도감의궤, 경종즉위(1720)
 인원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영조33(1757)
 명릉개수도감의궤, 영조20(1744)
 (의릉)산릉도감의궤, 영조1(1725)
 (선의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 영조6(1730)
 온릉봉릉도감의궤, 영조15(1739)
 장조영우원묘소도감의궤, 영조38(1762)
 현릉원원소도감의궤, 정조13(1789)
 헌경혜빈현릉원원소도감의궤, 순조15(1815)
 정성왕후산릉도감의궤, 영조33(1757)
 영종대왕산릉도감의궤, 정조즉위(1776)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 순조5(1805)
 건릉산릉도감의궤, 순조즉위(1800)
 건릉천봉산릉도감의궤, 순조21(1821)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 현종즉위(1834)
 순조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철종7(1856)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 철종8(1857)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현종9(1843)
 현종경릉산릉도감의궤, 철종즉위(1849)
 효정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광무7(1903)
 문조수릉산릉도감의궤, 현종12(1846)
 문조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철종6(1855)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 고종27(1890)
 철종예릉산릉도감의궤, 고종즉위(1863)

논문접수일 (2013. 11. 18)
 심사완료일 (2013. 11. 29)
 게재확정일 (2013. 12. 04)